

서울특별시 강남구 u-강남 도시관제센터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연희 인

201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훈령 제218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u-강남 도시관제센터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u-강남 도시관제센터 설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익목적의 CCTV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u-강남 도시관제센터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관리에”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u-강남 도시관제센터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CCTV”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같은 조 제4호 중 “서울특별시 u-강남 도시관제센터”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u-강남 도시관제센터”로, 같은 조 제5호 중 “CCTV심의위원회”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7. “관제시스템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생활안전, 법규위반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관제시스템과 새로이 구축되는 관제센터의”를 “관제센터의”로, “도시관제정보”를 “영상정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CCTV”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의 1항의”를 “제26조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CCTV”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산정보과”를 “재난안전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CCTV 전담부서”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로, “CCTV규격”을 “영상정보처리기기 규격”으로 하고, “CCTV운영위원회”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CCTV의 설치기준)”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으로,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중전의 제3호) 중 “CCTV”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7조의 제목“(CCTV의 설치목적)”을“(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CCTV”를“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8조의 제목“(CCTV의 설치·운영)”을“(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으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CCTV”를“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보호하기 위하여”를“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범죄예방용 CCTV”를“방법용 영상정보처리기기”로,“제35조의 심의위원회에서”를“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로 한다.

제9조 중“CCTV”를“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1조) 중“CCTV를 설치할”을“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으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2조)의 제목“(CCTV의 조작 및 기능)”을“(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으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CCTV”를“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3조)의 제목“(CCTV의 관리 등)”을“(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업무의 위탁)”으로, 같은 조 제1항 중“CCTV 설치”를“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를“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37조까지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5조)의 제목“(CCTV 점검)”을“(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으로 하고, 본문 중“CCTV”를“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7조)제2항 중“CCTV”를“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8조)제1항 중“범위”를“범위 및 우선순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에는 각 설치목적에도 불구하고 방법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CCTV”를“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파견시켜”를“관제센터에”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22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3항(중전의 제4항) 중“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관제 전담요원은”을“관제 전담요원은”으로, 같은 조 같은 항“CCTV”를“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26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중“CCTV”를“영상정보처

리기기”로 한다.

제25조(중전의 제27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본문 중 “CCTV”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30조(중전의 제32조)제1항 중 “CCTV”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31조(중전의 제33조)제1항 중 “CCTV”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5장의 제목 “CCTV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33조(중전의 제35조)의 제목 “(CCTV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CCTV 심의위원회”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CCTV 전담부서”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로, 같은 조 제4항 중 “CCTV 전담부서 소속국장은”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소속 국장, 강남 경찰서와 수서 경찰서 담당 과장, 서울시교육청 또는 강남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은”을 “위촉직 위원은”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3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간단체·학계·기업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3인 이내”로,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5호)는 “지역 내 주민 대표 3인 이내”로 한다.

제35조(중전의 제37조)의 제목 “(CCTV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CCTV심의위원회”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로,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

중 “CCTV”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같은 조 제2항 중 “CCTV설치장소”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로 한다.

제36조(중전의 제38조)의 제목 “(CCTV심의위원회 운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제37조의 각호에”를 “제34조의 각 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CCTV”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은 삭제하며, 별지 제3호서식(중전의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중전의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제센터 근무자 수칙

**관제센터 근무자 수칙**

**보안 관리**

- 영상정보보호 등 보안유지를 위해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 관리
- 외부인 출입에 대한 「출입제한구역 출입자 명부」를 비치, 방문자, 방문 일시, 방문 목적,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록 유지
- 외부인 출입 시 카메라(휴대폰 등) 촬영을 통제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영상정보처리기는 설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녹음기능 절대 금지(당초 설치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 영상정보를 관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사용 금지
- 센터 내 모든 상황 근무자 및 유지보수 등의 장애조치를 위해 방문하는 상시 출입자는 반드시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상황 처리**

- 모니터링 중 사건·사고 등의 상황 발견 시
  - 상황보고(모니터링 요원) → 상황파악 및 유지(경찰/모니터링요원) → 상황전파(유·무선 등) → 기록 유지 → 처리결과 보고
- 비상벨 작동 감지 시
  - 상황파악(경찰/모니터링 요원) 및 전파(유·무선 등) → 기록 유지 → 처리결과 보고

**비상연락망 정비 철저**

- 모든 근무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상시 점검 및 유지





[별지 제2호서식]

<b>개인영상정보( <input type="checkbox"/> 존재확인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정정 <input type="checkbox"/> 삭제) 청구서</b>				처리기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 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0000.00.00 00:00 ~ 0000.00.00 00: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0 인근 영상정보처리기기)		
	청구 목적 및 사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u-강남 도시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의 존재확인, 열람, 정정, 삭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정정 □ 삭제) 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

□ 청구 내용	
□ 조치 내용	
□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u-강남 도시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 제28조에 따라 귀하의 청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남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 위임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u-강남 도시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 존재확인  열람  정정  삭제)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자료 수령 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u-강남 도시관제센터 근무자로부터 제공받은 영상자료를 제3자에게 재제공할 수 없음을 고지 받았음.

2.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영상자료 수령자는 사용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할 경우 즉시 제공받은 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4.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59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제75조(과태료)

5. 분기별 영상정보 파기실적 재난안전과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에게 통보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계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HP :

)

서울특별시 강남구 u-강남 도시관제센터장 귀하



#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p><b>제1조(목적)</b> 이 규정은 <u>공익목적의 CCTV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u-강남 도시관제센터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관리에</u>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도시관제시스템</u>”(이하 ‘<u>관제시스템</u>’이라 한다)이라 함은 현장에 설치한 <u>CCTV</u> 및 정보수집장치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 및 정보를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서 도시관제센터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p> <p>2. “<u>폐쇄회로 텔레비전</u>”(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p> <p>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u>CCTV</u>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p> <p>4. “<u>서울특별시 u-강남 도시관제센터</u>(이하 “<u>관제센터</u>”라 한다)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u>CCTV</u> 및 관제시스템을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각종 사건·사고예방, 사후조치 및 관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강남구 도시통합관제센터를 말한다.</p> <p>5. “<u>CCTV심의위원회</u>”란 <u>CCTV</u>설치·운영, 영상정</p>	<p><b>제1조(목적)</b> ----- <u>서울특별시 강남구 u-강남 도시관제센터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u> -----</p> <p>-----.</p> <p><b>제2조(정의)</b>-----</p> <p>-----.</p> <p>1.-----</p> <p style="text-align: center;">----- <u>영상정보처리기기</u> -----</p> <p>-----.</p> <p>2. “<u>영상정보처리기기</u>”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u>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u>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p> <p>가. “<u>폐쇄회로 텔레비전</u>”(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p> <p>나. “<u>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u>”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p> <p>3.----- <u>영상정보처리기기</u>-----</p> <p>-----.</p> <p>4. “<u>서울특별시 강남구 u-강남 도시관제센터</u>-----</p> <p style="text-align: center;">----- <u>영상정보처리기기</u>-----</p> <p>-----.</p> <p>5. “<u>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u>”란 <u>영상정보처</u></p>

보보호 등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의기구를 말한다.

<신설>

<신설>

**제3조(적용범위)** 생활안전, 법규위반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관제시스템과 새로이 구축되는 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도시관제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에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의 1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CCTV 및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전담부서는 CCTV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장소 및 CCTV규격 등에 대한 사전협의, 관제센터 구축·운영업무, CCTV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자원 관리 업무를 추진한다.

**제6조(CCTV의 설치기준)**

① CCTV의 설치에 관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리기기-----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7. “관제시스템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제센터의 -----

-----영상정보-----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

영상정보처리기기-----

② -----

-----제26조

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② (현행과 같음)

③ -----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격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

처리기기-----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법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 (생략)

**제7조(CCTV의 설치목적)**

① 구청장은 CCTV를 방법, 쓰레기투기방지, 주차 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 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CCTV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시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설치 예정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제35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CCTV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CCTV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구청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조(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자원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과 관련한 처리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안내판의 설치)**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2조(CCTV의 조작 및 기능)**

① 구청장은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

<삭제>

2. 영상정보처리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

3. (현행과 같음)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① ----- 영상정보처리기기-----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① -----

-----위하여 -----

-----영상정보처리기기-----

② 방법용 영상정보처리기기--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위원회의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

**제9조(의견수렴)** ---- 영상정보처리기기-----

----.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삭제>

**제10조(안내판의 설치)**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

1. ~ 3.(현행과 같음)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법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여성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방법용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CCTV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4조(유지보수)** 구청장은 CCTV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CCTV 점검)** 구청장은 CCTV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CCTV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도시관제시스템의 연계)**

① (생략)  
② CCTV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8조(관제의 범위)**

① 구청장은 관제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관제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법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업무의 위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삭제>**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제15조(도시관제시스템의 연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관제의 범위)**

① 범위 및 우선순위

②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에는 각 설치목적에도 불구하고 방법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인력 확보 등)**

- ① 구청장은 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관제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CCTV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CCTV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경찰서장은 방범용 CCTV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파견시켜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방범용 CCTV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학교 내 CCTV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 ① · ② (생략)
- ③ 관제 전담요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 CCTV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관제 전담요원은 근무 중 CCTV로 발견한 범죄·사고·재난 재해 등을 관제하여 경찰서(112 지령실), 재난 상황실 등 해당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수임 등)**

- ① 구청장은 유관기관의 CCTV 통합·연계 시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 받아 운영·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수임 받은 구청장은 방범용 이외의 모든 CCTV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방범용 CCTV 운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사생활침해 등 각종 민원과 관련된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의 책임으로 한다.

**제27조(영상정보 보호원칙)**

- ① 구청장은 CCTV를 설치·운영할 때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의무)**

- ① 구청장은 CCTV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인력 확보 등)**

- ① -----  
-----  
-----  
-----  
-----  
영상정보처리기기  
-----  
-----.
- ② ----- 영상정보처리기기 -----  
-----.
- ③ ----- 영상정보처리기기 -----  
-----  
-----  
-----  
관제센터에  
-----  
영상정보처리기기  
-----.
- ④ ----- 영상정보처리기기 -----  
-----.

**제20조(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 ③ 관제 전담요원은 -----  
-----  
영상정보처리기기  
-----  
-----.

**제24조(권한의 수임 등)**

- ① ----- 영상정보처리기기 -----  
-----  
-----.
- ② -----  
-----  
영상정보처리기기  
-----  
영상정보처리기기  
-----  
-----.

**제25조(영상정보 보호원칙)** ----- 영상정보처리기기 -----

**제30조(교육의무)**

- ① ----- 영상정보처리기기 -----  
-----  
-----.

② (생략)

**제33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구청장은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삭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제5장 CCTV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35조(CCTV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관계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CCTV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CCTV 전담부서 소속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구청장, CCTV전담부서 소속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생략)

2. 관할경찰서CCTV업무 담당과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 2인 이내

4. 서울시교육청장과 강남교육지원청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관련업무 부서장

5.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

6. (생략)

**제37조(CCTV심의위원회 심의안건)**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CCTV 설치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CCTV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CCTV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생략)

3. CCTV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 영상정보처리기기-----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3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③ -----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

④ -----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소속 국장, 강남 경찰서와 수서 경찰서 담당 과장, 서울시교육청 또는 강남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은 -----.

⑤ 위촉직 위원은 -----

1. (현행과 같음)

<삭제>

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간단체·학계·기업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3인 이내

<삭제>

3. 지역 내 주민 대표 3인 이내

4. (현행과 같음)

**제3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심의안건)**

① ----- 영상정보처리기기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1. 영상정보처리기기 -----

2. (현행과 같음)

3. 영상정보처리기기 -----

--

- 4. CCTV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 5. CCTV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 6. · 7. (생략)

② CCTV설치장소 선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선정 기준에 따른다.

**제38조(CCTV심의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는 제3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CCTV 전담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 ③ · ④ 생략

- 4. 영상정보처리기기 -----
- 5. 영상정보처리기기 -----
- 6. · 7. (현행과 같음)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

**제3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운영)**

- ① ---- 제34조의 각 호에-----  
-----  
-----.
- ② -----  
--영상정보처리기기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신 · 구별표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p>[별표] 관계센터 근무자 수칙</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b>관계센터 근무자 수칙</b></p> <p><b>□ 보안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정보보호 등 보안유지를 위해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 관리</li> <li>○ 외부인 출입에 대한 「출입제한구역 출입자 명부」 를 비치, 방문자, 방문 일시, 방문 목적,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록 유지</li> <li>○ 외부인 출입 시 카메라(휴대폰 등) 촬영을 통제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li> <li>○ 영상정보를 관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사용 금지</li> <li>○ 센터 내 모든 상황 근무자 및 유지보수 등의 장애조치를 위해 방문하는 상시 출입자는 반드시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li> </ul> <p><b>□ 상황 처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중 사건·사고 등의 상황 발견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보고(모니터링 요원) → 상황파악 및 유지(경찰/모니터링요원) → 상황전파(유·무선 등) → 기록 유지 → 처리결과 보고</li> </ul> </li> <li>○ 비상벨 작동 감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파악(경찰/모니터링 요원) 및 전파(유·무선 등) → 기록 유지 → 처리결과 보고</li> </ul> </li> </ul> <p><b>□ 비상연락망 정비 철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근무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상시 점검 및 유지</li> </ul> </div>	<p>[별표] 관계센터 근무자 수칙</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b>관계센터 근무자 수칙</b></p> <p><b>□ 보안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정보보호 등 보안유지를 위해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 관리</li> <li>○ 외부인 출입에 대한 「출입제한구역 출입자 명부」 를 비치, 방문자, 방문 일시, 방문 목적,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록 유지</li> <li>○ 외부인 출입 시 카메라(휴대폰 등) 촬영을 통제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li> <li>○ 영상정보처리하기는 설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녹음기능 절대 금지(당초 설치목적을 벗어나 합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li> <li>○ 영상정보를 관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사용 금지</li> <li>○ 센터 내 모든 상황 근무자 및 유지보수 등의 장애조치를 위해 방문하는 상시 출입자는 반드시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li> </ul> <p><b>□ 상황 처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중 사건·사고 등의 상황 발견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보고(모니터링 요원) → 상황파악 및 유지(경찰/모니터링요원) → 상황전파(유·무선 등) → 기록 유지 → 처리결과 보고</li> </ul> </li> <li>○ 비상벨 작동 감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파악(경찰/모니터링 요원) 및 전파(유·무선 등) → 기록 유지 → 처리결과 보고</li> </ul> </li> </ul> <p><b>□ 비상연락망 정비 철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근무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상시 점검 및 유지</li> </ul> </div>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 ] 열람 [ ] 정정·삭제 [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요구내용 [ ] 열람 [ ] 정정·삭제 [ ] 처리정지  
[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삭제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0000 귀하

작성 방법

1. '대리인'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란에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란에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란에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1. 210mm×297mm[일반B용지 7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 ] 열람 [ ] 열람연기 [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 열람  
[ ] 일부열람  
[ ] 열람연기  
[ ] 열람거절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 열람·사형 [ ] 서문·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물·인화물 [ ] 기타  
열람 방법 [ ] 직접방문 [ ] 우편 [ ] 팩스 [ ] 전자우편 [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신명 의 직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정정 □ 삭제)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0000.00.00 00:00 ~ 0000.00.00 00: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0 인근 영상정보처리기기)

청구 목적 및 사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u-강남 도시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 정정, 삭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삭제>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 [ ] 정정·삭제, [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input type="checkbox"/> 정정·삭제 <input type="checkbox"/> 처리정지 조치 내용	
<input type="checkbox"/> 정정·삭제 <input type="checkbox"/>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신 명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

[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정정  삭제) 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input type="checkbox"/> 청구 내용	
<input type="checkbox"/> 조치 내용	
<input type="checkbox"/>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u-강남 도시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 제28조에 따라 귀하의 청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남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위임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0000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m<sup>2</sup>)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위임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u-강남 도시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  존재확인  열람  정정  삭제 )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자료 수령 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u-강남 도시관제센터 근무자로부터 제공받은 영상자료를 제3자에게 재제공할 수 없음을 고지 받았음.
2.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영상자료 수령자는 사용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할 경우 즉시 제공받은 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4.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59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제75조(과태료)

5. 분기별 영상정보 파기실적 재난안전과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에게 통보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계급: 생년월일: 성명: 서명 (HP: )

서울특별시 강남구 u-강남 도시관제센터장 귀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령(행정자치부 규정)에 따른 용어 및 운영 규정 개정

### 2. 주요내용

- CCTV → 영상정보처리기로 용어 변경
- 해당기관과의 협의내용에 “관제의 우선순위” 추가
- 당연직 위원의 범위 변경